

VI. 결 론

전기철도차량의 Propulsion system의 기술동향은 소형 경량화, 대출력과 Compact한 Control system을 여리면에서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새로운 Inverter system에 의한 학계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회생제동의 안정화, 점착성능의 향상, 제어용량의 대용량화, 장치의 소형 경량화, 소음경감등 전기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Total system으로서 철도차량은 Propulsion system 이외에도 집전장치(Pantograph 등), 주행장치(bogie) 차체, 선로, 신호시스템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연구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 政府 施策 ◆

勞使紛糾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 공고 - 紛糾피해업체 긴급운영資金지원 -

정부는 労使紛糾와 관련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확인요령을 일부 수정,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4-83호, 1994. 8. 3)했다.

상공부는 이 공고에서 자체분규 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과 특별한 자체 규칙사유 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임금체불 및 부도우려에 대비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사분규로 인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및 상공자원부가 확인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노사분규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상공부는 그러나 지난 9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확인요령 을 일부 개정,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과 같은 지원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으며 확인기관이 확인 및 수혜사항을 매월 상공부에 통보토록 하던 것도 연말에 한번만 보고토록 했다.

상공부는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사례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삭제했으며 확인기관의 보고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94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

1. 지원내용

- 임금체불 부도우려에 대비한 긴급운영자금지원

2. 지원대상업체 유형

- 유형 A : 자체 분규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 유형 B : 특별한 자체 귀책사유 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3. 지원절차

제 2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의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확인기관” (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노사분규 피해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 1부 (별지 각호서식)

나. 거래기업 또는 자기기업의 노사분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확인 및 확인서 교부

확인기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여부를 결정하되 제 2항의 지원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에 확인서 1부를 교부한다.

- 가. 당해기업 또는 거래기업의 노사분규 사실여부 및 분규상황
- 나.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6. 확인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 확인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보고

확인기관은 확인결과 및 수혜사항을 결과보고서 (별지 제 3호 서식)에 작성하여 12. 31까지 상공자원부 (산업진흥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확인기관은 전 각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확인기관〉

| 확인기관명 | 확인대상업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각 시 · 도지부 ◦ 상공자원부 직할공단 및 마산 · 이리 수출자유 지역관리소 ◦ 한국철강협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 한국백화점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자원부 소관 전제조업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 공단(수출자유지역포함)내 입주기업 ◦ 철강, 비철금속 ◦ 요업, 석유 및 정밀화학 ◦ 기계 ◦ 전기(전선, 전지포함) ◦ 섬유 ◦ 자동차 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전자 관련기업() ◦ 조선 관련기업()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규모 소매점 |

工發法 支援대상 대폭 擴大

－ 商工部, 工業발전법개정안 立法예고 －

정부는 공업발전법상의 지원대상에 엔지니어링산업, 컨설팅업, 영상산업등 지식집약산업이나 공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0년주기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동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부문 발전시책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발법상의 합리화사업을 구조개선사업으로 개편, 경쟁력약화 업종의 구조개선에만 국한해 적용키로 하고 구조개선업종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발법의 지원대상을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미래지향적 산업발전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에 대한 전망, 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기술 · 인력등 기업활동요소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발전방향을 10년마다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부문발전시책을 수립, 운영하는 한편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선정, 고시토록 함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첨단기술 및 제품범위를 법규화하기로 했다.

또 합리화사업을 개편한 구조개선사업은 경쟁력 약화 업종에 국한해 운용하고 유망업종의 경쟁력보완과 같은 사업은 첨단기술부문 발전시책에 의한 기능별 지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을 민간연구기관, 사업자단체,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개발제품의 판로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전문화 유도시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업발전심의회 산하에 분과별 민간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中企 自動化지원대상 확정 – 商工部, 專業率 50% 이상 · 공장등록증 保有업체 –

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자동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로서 금융거래가 정상적이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단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는 이전 유예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공장면적내의 자동화설비 개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신·증설은 계속 불허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올 하반기에 시행할 중소기업자동화사업에 대한 사업예정공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 가운데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지원대상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특히 지원업체 심사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체되는 업종의 영위업체나 대기업이 추천하는 업체, 유망선진기술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대상기업, 국가공인 지도기관의 자동화기술지도를 받은 업체는 평가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심사반의 면접과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한 기업가의 경영자세를 평가한 후 사무실 면적이 과다하거나 호화집기를 비치하고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건전치 못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올 하반기 자동화사업지원자금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2천억원, 외화대출자금 1600억 원,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 600억원, 금융기관자금 800억원 등 총 5천억원을 조달,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연리 7% (외화자금은 LIBOR+2.0% 이내)의 3년거치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되며 연간 3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또 대출은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전 은행의 본·지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中企 協同화사업 완화 – 商工部, 참가업체수 5社 이상서 3社 이상으로 개정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권의 협동화사업 참가업체수를 종전의 5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공자원부는 대도시권에서 동종 또는 관련업종으로서 협동화 사업의 공동 추진의사를 갖는 5개 이상 업체의 규합이 어렵고 이에 필요한 입지확보도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중소기업 육성관련 통합고시를 개정했다.

상공부는 특히 5개 이상의 업체가 협동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한 6785평의 부지가 필요했으나 이번 통합고시 개정으로 부지확보 및 협동화공장 설립에 따른 참여업체의 의견일치가 쉬워져 30% 정도의 협동화사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동화사업은 동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참여, 공장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공장을 집단화하고 생산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함으로써 자본·경영·기술의 협업화에 의한 기업경쟁 여건과 환경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물류비용절감 및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협동화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79년부터 163개 사업장에 대해 총 395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참가업체도 2015개에 이르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장집단화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공동화가 44건, 공해방지시설공동화가 28건, 기술공동화가 3건, 공해업종이전집단화가 7건, 물류공동화사업 2건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총 42개 사업장에 101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협동화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개별설치때의 투자비용과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시설·기술·경영을 공동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 等級表示 절차 간소화 – 商工部, 에너지이용 合理化法 개정안 立法豫告 –

에너지관리분야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기자재에 대한 등급부여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돼 등급표시절차가 간소화되고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채용제도가 선임제도로 바뀐다.

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양도·합병에 대한 인가제도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에 대한 지정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돼 특정성이 배제되고 일정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진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확정한 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향후 이산화탄소 절감소요의 60% 이상을 담당해야 할 에너지이용합리화 노력 을 강화키 위해 최저효율기준 적용대상을 에너지공급설비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공표제도를 정부가 공표와 동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제조업에만 적용하는 목표에너지원 단위 권고제도를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폐열등 폐열이용 촉진을 위해 폐열발생자에게 회수이용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가이용하지 않는 폐열에 대해서는 제 3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책무를 부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에너지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절감을 기하기 위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 정부에 보고토록 하며 정부는 에너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해 특정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공급설비 등을 사용·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술개발시책의 추진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아래 정부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장기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할 대상기관을 정해 기술개발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品質經營진단사 制度 시행 －工振廳, 中小企業 ISO 9000 획득 지도－

中小企業의 품질경영체계를 진단하고 ISO 9000 인증획득을 지도할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공업진흥청은 EU지역에서 ISO 9000 인증획득 의무화 품목이 늘어나고 동남아 지역도 무역거래 조건으로 ISO 9000인증 요구가 급증하는 등 ISO 9000인증 수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ISO 9000 인증획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정예요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품질경영촉진법에 품질경영진단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경영진단사란 품질경영 진단지도기관에 소속되어 정부의 품질경영 지도사업 대상기업에 소정 기간동안 상주하면서 품질경영체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ISO 9000인증획득 가능 수준까지 지도하는 국가인정 품질경영 정예요원이다.

품질경영진단사가 되기 위해서는 ISO 9000 인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인증경험이 있거나 품질경영분야에 1년 이상 경력있는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진단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업진흥청은 중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200명의 품질경영진단사를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한국표준협회등 4개 교육기관 368명의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실시해 126명의 요원을 확보, 113개 중소기업지도 현장에 투입한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요원을 양성해 선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업진흥청은 확보된 126명의 요원에 대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진단사로서 자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품질경영진단사가 국가지도사업의 핵심축으로서 지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품질경영 국제워크숍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는등 자질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진청은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 도입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이 보다 활기를 띠는 동시 기업의 품질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품질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 輸入검사 국내기관으로 移管키로 - 工振廳, 러와 국내 시험검사기관 승인 협조 합의 -

러시아정부가 실시하던 수입검사가 한국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상품의 러시아시장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박삼규공업진흥청장과 베즈베르히러시아연방 국가표준화·계량·인증위원회(GOS-R)위원장 사이에 개최된 제 3 차 한·러 정례표준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의 6 개 시험검사기관이 러시아에서 시험검사 인정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상호간밀히 협력키로 했다.

러시아측은 현재 개편추진중인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정비되는대로 올 10월까지는 러시아실사단을 派韓,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시험기관이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국내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에서 뿐만아니라 의류·직물·화학분야 등에까지 국내 시험검사기관이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게될 경우 러시아측에 진출하려는 한국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 장벽을 타개하고 수출증대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진청은 이밖에도 러시아가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계량·정밀 측정분야에서의 기술정보교류, 1995-2000년회기 동안 한국의 IEC이사국출마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등 향후 양국간의 표준·계량·시험검사분야등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키로하고 다음 한·러 정례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 입법예고 - KS 표준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

공업진흥청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공업진흥청 공고 제 1994-1177 호, '94. 7. 29) 했다.

1. 개정취지

- KS표시 허가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및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표시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KS표시허가 요건 강화

- 이종제품의 KS표시허가 추가신청시 공장심사 면제대상 제외
- KS표시허가 심사기준에 환경관리 사항 추가
- KS표시허가를 심사할 공정심사원의 자격 강화
- 기업규모별 심사기준 차등적용 조항 폐지

나. KS사후관리 강화 및 우수업체 사후관리 완화

- 등급별 공장심사제도 실시
- 특별공장검사 사유확대 (4종 → 7종) 및 공장검사기준 강화 (10항목 → 30항목)
- KS표시허가 위반시 행정처분 요건 강화
-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후관리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업진흥청장 (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표준계획과, 전화 : 503-7928, FAX : 503-251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國內外 情報 ◆

방글라데시, 변압기 輸入 급감

– 電力손실 높아 세계은행 신규차관 중단 –

방글라데시의 전력 공급은 PDB등 3개 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DESA는 91년 10월 수도 다카 및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종전에는 이 업무를 PDB에서 담당했다.